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004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및 제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제8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p> <p>1. ~ 3.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 -----.</p> <p>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87조----- ----- ----- -----.</p> <p>1. ~ 3. (현행과 같음)</p>